1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코올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β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β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β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β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β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3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합 계		**1,305,668**	**591,765**	713,903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374,320**	**176,018**	198,302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백화점	302	171	131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59만 2천개**	**71만 4천개**
집합 금지	12만 9천개	13만 5천개
운영 제한 (영업시간/인원제한)	46만 3천개	57만 9천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제외

4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12.5.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적용	12개 광역	-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2개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경남, 울산)	1개 (강원)	1개 (제주)
2단계 적용	5개 광역	3개 (서울, 인천, 경기)	-	1개 (광주)	-	1개 (부산)	-	-
	17개 기초		4개 (제천, 충주, 천안, 서산)	5개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이서면)	-	4개 (창원,진주, 하동, 김해)	4개 (홍천, 철원, 원주, 춘천)	-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단계
1	수도권	서울	11.24.~12.7.	서울 전지역	2(↑)
2		경기	11.24.~12.7.	경기 전지역	2(↑)
3		인천	11.24.~12.7.	인천 전지역	2(↑)
4	충청권	세종	12.1.~12.14.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12.1.~12.14.	대전 전지역	1.5(↑)
6		충북	12.1.~12.14.	충북 일부지역	1.5(↑)
			11.28.~12.14.	제천시[1]	2(↑)
			12.1.~12.14.	충주시	2(↑)
7		충남	12.1.~12.14.	충남 일부지역	1.5(↑)
			12.1.~12.7.	천안시	2(↑)
			12.7~12.13	서산시	2(↑)
8	호남권	광주	12.3.~12.6.	광주 전지역	2(↑)
9		전북	11.23.~별도명령시	전북 일부지역	1.5(↑)
			11.28.~별도명령시	군산시	2(↑)
			11.30.~별도명령시	익산시	2(↑)
			11.30.~별도명령시	전주시	2(↑)
			12.1.~12.14	완주군(이서면)	2(↑)
10		전남	11.24.~12.7.	전남 일부지역	1.5(↑)
			11.20.~별도명령시	순천시	2(↑)
11	경북권	대구	12.1.~12.14.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	12.1.~12.14.	경북 전지역	1.5(↑)
13	경남권	부산	12.1.~12.14.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12.1.~12.14.	울산 전지역	1.5(↑)
15		경남	11.26.~12.9.	경남 일부지역	1.5(↑)
			11.29.~12.12.	창원시	2(↑)
			11.26.~12.9.	진주시	2(↑)
			11.21.~12.11.	하동시	2(↑)
			12.6.~12.19.	김해시	2(↑)
16	강원	강원	12.1.~12.14.	강원 일부지역	1.5(↑)
			12.1.~별도명령시	철원군	2(↑)
			12.1.~별도명령시	홍천군	2(↑)
			12.1~12.7.	원주시	2(↑)
			12.3.~12.14.	춘천시	2(↑)
17	제주	제주	12.1.~12.14.	제주 전지역	1.5(↑)

1) 충북 제천시는 12.1~12.7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